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지원 신설 등〉

■ 운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81, 2217083,
2217084, 2217091, 2217092, 2217116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개요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II . 검토의견	7
1.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양로·요양지원 체계	14
2.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지원 신설 등	19
3. 본인 양로지원 시 배우자 양로지원 근거 마련	27
※ 참고자료	32

I. 개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6. 2. 26.
- 3) 회부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양로시설은 주거·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5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6. 2. 26.
- 3) 회부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 편차 및 시설 공급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양로시설은 주거·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6. 2. 26.
- 3) 회부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는 고령·질병 등으로 거주복지 지원이 절실하나, 현행 제도는 “양로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돌봄) 필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동반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가족관계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공립 외 양로·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생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6. 2. 26.
- 3) 회부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공급 측면에서 지원이 제약될 수 있고, 민간·비국공립 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노인 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6. 2. 26.
- 3) 회부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제로 규정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등 제도 운영상 제약이 존재함. 또한, 실제로는 양로·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공립 외 양로·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6. 2. 26.
- 3) 회부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의증)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거동불편 등으로 돌봄·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제8조의2).

Ⅲ. 검토의견

□ 6건의 개정안¹⁾은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여, 국가보훈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현행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양로·요양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6건의 개정안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²⁾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로지원 등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	제63조(양로·요양지원) -----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81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8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8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9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9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116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8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9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116호).

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서-----

양로·요양지원을-----

-----.

제65조(양로·요양지원 등의 위탁) ① -----양로·요양지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

② 양로·요양지원과-----

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u>제19조(양로지원)</u>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u>국가의 양로시설</u>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u>국가의 양로시설</u>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양로지원을</u> 받을 수 있다.	<u>제19조(양로·요양지원) ①</u> ----- ----- ----- ----- ----- ----- ----- ----- ----- ----- -----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u>----- -----. ----- -----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u>----- ----- ----- ----- <u>양로·요양지원을</u>-----.
<신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

	· 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 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 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 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 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해서는 <u>국가의 양로시 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u> <후단 신설>	제54조의2(양로·요양지원) ① --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양로·요양시설----- . 이 경우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 · 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 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 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 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 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 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 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제70조(양로·요양지원) ① ----- ----- ----- ----- ----- ----- ----- ----- ----- -----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 ·요양시설에서----- -. -----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8조(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양로·요양지원) ① ----- ----- ----- ----- ----- ----- ----- ----- -----양로·요양시설에서-----. 이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u>신설></u> 1. · 2. (생 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u>양로</u>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u>양로시설</u> 외의 <u>양로시설</u>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u>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u> 1. · 2. (현행과 같음) ② -----<u>양로</u> · <u>요양지원을</u>----- -----<u>양로</u> · <u>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u>----- ----- -----.
---	--

1.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양로·요양지원 체계

- 현행 보훈관계법률³⁾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 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서 의식주 등을 제공하는 양로지원을 실시하고 있음.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등으로 약칭함).

4) 국가유공자법 제63조, 독립유공자법 제19조,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2,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0조, 참전유공자법 제8조, 고엽제법 제8조의2, 5·18유공자법 제84조

* (예시) **국가유공자법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양로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일정 연령 이상⁵⁾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유공자가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본인만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배우자가 동반 입소할 수 없음.
- 법률은 양로지원을 국가 등의 양로시설⁶⁾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이를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양로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어,⁷⁾ 현재 양로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보훈원 1곳에서 실시하고 있음.⁸⁾
- 양로지원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함. 다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양로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게 되는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5)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을 말함. 다만, 참전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연령 기준을 남녀 구분 없이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은 상이유공자의 경우 연령 기준을 5세 낮추어(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정하고 있음.

6) 국가유공자법 등은 양로지원을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로시설에서 양로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 (예시) **국가유공자법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양로지원은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음에도 보훈보상자법의 경우 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함.

8) 보훈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로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음. 수원 보훈원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은 [참고](p.33.) 참조.

보상금 중 일부 금액과 수당 등의 지급이 정지됨.⁹⁾

[표 1]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양로지원 개요

구분		독립 유공자법	국가 유공자법	보훈 보상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	5·18 유공자법	참전 유공자법	고엽제법
지 원 대 상	연 령	남성 6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 (상이국가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65세 이상	
	범 위	본인+유족	본인+유족	본인	본인+유족		본인	
		(유족은 보상금을 받는 자 한정)	(유족 중 자녀 제외)	-	(유족 중 자녀 제외)		-	
배우자 동반 입소 가부		○ (유족의 배우자도 동반 입소 가능)	○	×	○		×	
지 원 기 관	법 문 언	국가의 양로시설 → 그 외 사회복지시설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양로시설 → 그 외 양로시설 위탁	
	수 행 방 식	위탁 규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양로지원 권한 위탁						
비용 부담		국가						
입소시 보훈 급여금	보상금 중 일부 금액 지급 정지				-			
	생활조정수당 정지	수당 정지 (무공영예수당 제외)	수당 정지		생계지원금 정지			

9) 국가유공자법 제20조, 독립유공자법 제11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23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5조의2 제5항, 참전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 고엽제법 제7조의10제4항, 5·18유공자법 제89조의2제5항

* (예시) 국가유공자법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한편,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요양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¹⁰⁾¹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기관¹²⁾에서 제공받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됨.¹³⁾

10) 국가유공자법 제63조의2, 독립유공자법 제1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0조의2, 참전유공자법 제8조의2, 고엽제법 제8조의4, 5·18유공자법 제84조의2(보훈보상자법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예시) **국가유공자법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11)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생략)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보훈관계법률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지급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60%·80%를 보조하고 있음.

[표 2]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요양지원 보조 개요

지원대상자	지급 조건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
○ 독립유공자 ○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80%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공로자 ○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 부모	○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자	4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60%
○ 참전유공자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60%

자료: 국가보훈부

-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 (시행령 제15조의8)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

2.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지원 신설 등

□ 6건의 개정안은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로지원을 요양지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①지원시설을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로 확대하고, ②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¹⁴⁾

○ 다만, 앞선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양로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¹⁵⁾ 개정안은 위탁 가능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 외에 이러한 사업수행방식에 대하여는 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가 양로·요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더하여 요양시설이 추가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임.

14) 개정안은 “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양로시설”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하 “요양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전제하고 논의함.

*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3. (생략)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5) (예시) 국가유공자법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표 3] 개정안 개요

구분		현행	개정안
지원형태		양로지원	양로·요양지원
지원 시설 확대	설치·운영 주체	국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 유형	양로시설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사업수행방식		위탁	위탁
위탁 가능 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표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2025. 12. 31. 기준 / 단위: 명, %)

구분		양로 시설	노인요양시설								
시설		수원 보훈원	보훈원 부설 전문요양 센터*	수원 보훈요 양원	남양주 보훈 요양원	김해 보훈 요양원	대구 보훈 요양원	광주 보훈 요양원	대전 보훈 요양원	원주 보훈 요양원	전주 보훈 요양원
지역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남	대구	광주 전남	대전	강원	전북
입 소 현 황	정원	180	28	222	206	200	200	200	200	200	200
	현원	83	17	216	204	197	188	197	192	194	150
	입소율	46.1	60.7	97.3	99.0	98.5	94	98.5	96	97	75

자료: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복지시설 현황」

□ 개정안은 보훈요양원 입소 등 요양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원
입소 등의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자¹⁶⁾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부담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또한, 현재 양로지원은 수원에 위치한 보훈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훈요양원은 각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어, 지원 시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할 수 있고, 보훈대상자가 보다 전문적인 요양·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5]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비교

구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설치목적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입소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주요 기능	식사 및 주거 공간 제공 등	요양·돌봄 제공 등
시설·인력	의사 및 간호사	요양보호사, 의사 및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6)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받은 사람을 말함.

□ 다만, 양로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요양지원까지 그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노인요양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및 현행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요양지원 제도와의 정합성·형평성 및 요양시설 현황 등 제반여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노인복지법」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목적에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입소대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를 요구하고 있는데,¹⁷⁾ 개정안은 요양지원의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존부만을 요건으로 하고 그 외 요양 필요 여부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요양지원 대상자 중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 시설 입소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¹⁸⁾ 관련 법체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가에 의한 요양지원은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7)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 12. 8.>

18)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한 65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개정안은 60세(상이유공자 또는 여성의 경우)에서 64세의 보훈대상자도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음.

혼자서는 일상생활의 상당부분 이상이 어려운 사람(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이어야 하는데,¹⁹⁾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외 대상자의 심신상태 등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요양지원의 취지·목적·지원 필요성 및 복지재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른 요양지원 대상자의 범위·조건 등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현행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요양지원 보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일 것에 더하여 대상자의 생활수준이 어려울 것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심신상태,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부양의무자 존부만을 요건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들에게 현행 요양지원 보조 대상자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²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넷째, 현행 보훈관계법률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국가 부담으로 생활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일부(보상금의 일부 금액 및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수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²¹⁾ 개정안은 요양지원을 받게

19)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통해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음.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또는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보건복지부, 2026. 3.).

20)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요양시설 입소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국가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은 전액을 지원받게 됨.

21) **국가유공자법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

될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조건의 양로시설 입소 보훈대상자와 요양시설 입소 보훈대상자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합성 및 보훈대상자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양지원을 받게 될 대상자에 대하여도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요양원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보훈요양원은 전주보훈요양원을 제외하고는 입소율이 95% 이상 (p.21 [표 4] 참조)으로, 개정안에 따라 다수의 입소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운영되는 보훈요양원만으로 요양지원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요양지원을 수행할 제반여건 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6건의 개정안 중 보훈보상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보훈보상자법은 다른 보훈관계법률과 달리 요양지원 보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요양지원 필요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보훈

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상대상자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요양에 관하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훈보상자법에도 다른 보훈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²²⁾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그 밖에, 개정안 중 위탁 근거 조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081)은 양로·요양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양로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²³⁾ 별도의 개정이 없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양로지원의 위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개정 필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²⁴⁾
-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083)과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091)은 양로·요양지원의 위탁 근거 및 비용 부담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157호)

2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 7. (생략)

24) 개정안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의미한다면, 그 시설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법에서 이미 양로지원 위탁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²⁵⁾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 개정안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외 별다른 부칙을 두고 있지 않은데, 현재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개정안에 따른 요양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비 부담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규정하는 부칙(적용례)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보훈대상자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고, 현행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요양지원 보조’ 대상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본인 양로지원 시 배우자 양로지원 근거 마련

- 현행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은 양로지원 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상이등급 미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에 한정하고, 본인이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함께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반면,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보훈관계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양로시설에서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배우자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은 양로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관련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본인이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고령의 배우자를 두고 홀로 입소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양로지원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3건의 개정안²⁶⁾은 보훈보상대상자 등 본인이 양로지원 등을 받는 경우 그 배우자도 함께 양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그 배우자와 함께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른 보훈대상자들과 달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8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9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116호).

등에 대하여만 양로시설 동반 입소를 불가능하게 하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그들이 실질적인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참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양로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3건의 개정안²⁷⁾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여 입법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반의 체계적 정합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수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양로지원 대상자를 본인에 한정하면서, 배우자는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본인과 함께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로지원을 받고 있던 본인이 사망 등의 이유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여 양로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면,²⁸⁾ 배우자에 대한

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1578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1578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15783호).

28) **보훈보상자법 제5조(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 9. (생략)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③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72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양로지원 계속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⁹⁾

-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보훈관계법률은 양로지원 대상자에 유족을 포함하고 있어 배우자는 본인 사망 시 유족으로서 양로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양로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훈보상자법 등 3개의 법률은 양로지원 대상을 본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 사망 시 배우자가 양로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양로지원을 계속할 근거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둘째, 3건의 개정안 중 고엽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취업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외 다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총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개별 조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³⁰⁾ 지원 배제 근거에 관하여도 각 지원제도를 규정한 조문을 특정하여 배제하는

29) 국가보훈부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인과 함께 보훈원에 입소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양로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문언상 배우자에 대한 양로지원은 “양로지원을 받는 본인과 함께일 경우”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0) **고엽제법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생략)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³¹⁾

양로지원에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다른 조문의 배우자 정의를 참고하여 양로지원에도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지원 배제의 근거(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양로지원 조항(제8조의2)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고엽제법은 상이등급 미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를 양로지원, 고궁 등 이용지원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에도,³²⁾ 상이등급 미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를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상이등급 미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외 다른 부칙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시행 당시 이미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그 배우자가 함께 입소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미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칙(적용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1) **고엽제법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제외함.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배우자와 함께 양로시설에 입소함으로써 가족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 고

보훈원 (양로시설) 현황

□ 입소 대상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수원 보훈원 1개소만 있음)
- 무의탁 남 65세, 여 60세 이상 자(상이자는 남 60세, 여 55세이상)

□ 규 모

- 면적 : 대지 12,530㎡, 건물 10,340㎡(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 시설
 - 주거시설(126실) : 1인실 62실, 2인실 52실, 3인실 5실, 전문요양 7실
 - 편의 및 부대시설 : 목욕탕, 의무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장례식장, 강당, 식당, 노래방, 남·여 프로그램실, 탁구장, 이·미용실,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
 - 창훈묘원(공동묘지) 안장 현황 * 경기 화성시 봉담면 소재, 면적 1,713평
 - 현재 234기 안장, 잔여기수 86기
- 건립년도 : 1997. 6월 신축
- 보훈원 입소현황

(‘25.12월 기준, 단위: 명)

성별	정원	현원	본인							유족			
			소계	독립	국가	5.18	특수	고엽제	참전	소계	배우자	부모	손자녀
남	215	40	36	1	22	-	-	2	11	4	-	1	3
여		60	3	-	-	-	-	-	3	57	54	1	2
계		100	39	1	22	-	-	2	14	61	54	2	5

※ '06년 이후 양육지원 실적 없음

